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
 편집인 : 기획홍보과장
 서울특별시중랑구 봉화산길 179번지
 전 화 : 490-3315 ~ 9



제1518호 2009. 1. 30.

공 고

제2009-78호 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2

※ 전부서 및 의뢰기관에게 알려드립니다.

- ➡ 중랑구보 게재의뢰 및 편집 문의 TEL: 490-3317 / FAX: 490-3640
- ➡ 중랑구보 발간일은 매주 목요일이며,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날 발행
- ➡ 중랑구보 게재접수는 D-3일 18:00 까지 이며 공휴일은 날짜산정에서 제외



- 🔴 구보게재일자가 문서시행일이니,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🔴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,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.

공 람										



공 고

서울특별시중랑구 공고 제2009-78호

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및 「서울특별시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09년 1월 30일

중랑구청장

서울특별시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

I. 제정이유

- 세계보건기구(WHO)에서 규정한 건강에 이로운 건강도시사업 추진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도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.

II. 주요골자

- 가.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, 시행하여야 함(안 제4조)
- 나.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,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함(안 제5조)
- 다.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의 자문을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를 설치함(안 제6조제1항)
- 라.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,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(안 제6조제3항, 제4항)
- 마. 건강도시 생활터별, 분야별 건강도시실무협의회를 구성, 운영할 수 있음(안 제6조제5항)
- 바. 위원회 구성(안 제7조)

- 위원수 : 15인이내(위원장 : 부구청장, 부위원장 : 보건소장)
- 위 원 : 주민 또는 민간단체, 전문가, 구의원, 관련 국장 등
- 임 기 : 2년(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)

사. 위원의 해촉 : 부패연루, 품위손상, 장기치료 등의 경우(안 제10조)

아.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를 지급할 수 있음(안 제11조)

자. 구민은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정에 참여해 의견 제시 가능함(안 제12조)

차.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3조)

카. 구청장은 국제기구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정보기술의 교류나 홍보 활동 등에 협력해야 함(안 제14조)

Ⅲ. 의견제출

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2월 2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중랑구보건소장(참조 : 보건지도과장, 서울시 중랑구 봉화산길 179, 우 131-701, 전화 490-3746, FAX 490-3479, E-mail : yds1999@jungnang.seoul.kr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반 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 문의하실 분은 중랑구보건소 보건지도과로

(☎ 490-3746)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